

이 보도자료는 2018. 3. 29.(목) 11: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전화 031-212-1002 / 팩스 031-212-4465

수원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2차장검사

보 도 자 료

2018. 3. 29.(목)

자료문의 : 강력부장실
전화번호 : 031-212-8887
주책임자 : 부장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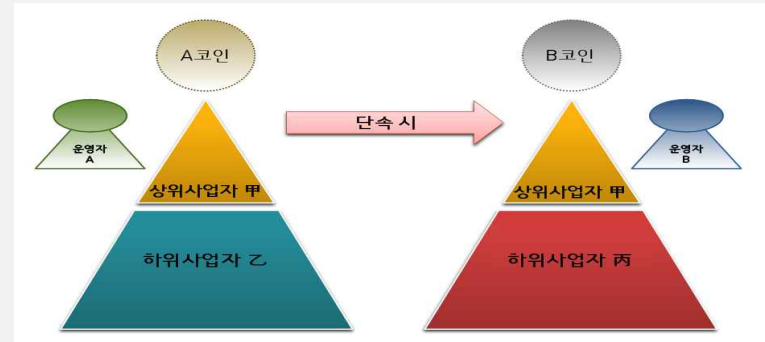
제 목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를 내세운 금융다단계 조직 등 수사결과** - 6개 조직 관련 95명 인지, 10명 구속 등 -

-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17. 10.~'18. 3.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재산을 가로챈 '금융다단계' 6개 조직을 단속하고, 상위 사업자 등 95명을 입건, 그 중 10명을 구속하였음
 - 이번 수사대상 6개 조직 중 4개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서 '○○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수신한 사안이었으나, 실제로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정상적 통용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매개로 투자수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음
 - 한편, 지역 센터장 등 다단계 조직의 '상위사업자'들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며 거액의 수당을 챙기고도, 단속이 되면 피해자 행세를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은 후,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하여 유사범행을 반복하는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다단계 범행의 근간(根幹)이라 할 수 있는 상위사업자까지 입건함으로써, 다단계 조직 자체의 근절을 도모하였음
-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생활침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음

I 수사 착수 배경 및 수사 착안점

- 최근 가상화폐 사업 투자에 따른 고수익 창출을 빙자하여 다단계 방식의 투자 수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7년 712건으로, 5년 새 9배 가까이 증가, 유사수신 범죄로 입건,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13년 1,532명에서 2017년 3,223명으로, 2배 가량 증가
- 실제로는 공범이면서 처벌을 회피해 온 불법 다단계 사업의 상위사업자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 대두

다단계 조직의 구조 설명



- 최근 대검의 '불법 다단계 등 조직적 금융사기 엄단 지시'에 따른 단속 활동 전개

II 수사 결과

- 6개 금융다단계 조직 단속
 - '○○ 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빙자 조직(4개) / 해외 사업 투자 빙자 조직(2개)
 - 관련 수사 결과, 그 중 4개 조직이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빙자한 불법 다단계 조직임을 확인
- 총 95명 입건(그 중 10명 구속, 9명 구속기소, 82명 불구속기소, 4명 기소중지)
 - ※ 구체적 범죄사실은 별지 참조

III 주요 수사 내용

1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업의 허구성 확인

- 이번에 적발된 가상화폐 관련 금융다단계 사범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통용가능한 특정 가상화폐를 독자 개발하였고 해당 코인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니 코인을 구입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언제 든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음
- 그러나, 실제 가상화폐 자체를 개발한 사실이 없거나, 가상화폐를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용가능성이 없고, 환전도 불가하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한 미끼에 불과하였음

이 사건 가상화폐의 실체

■ A코인의 경우

- A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혀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고, A코인의 시세도 내부 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계획이었으며, 주장한 바와 달리, 외국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도 위조된 것이었음

■ B코인의 경우

- B코인은, B코인 다단계 조직이 급조한 'B커피전문점' 외에서는 사용될 수 없었고, 자체 개설한 거래소에서 B코인의 시세를 임의로 조작함
- B코인 판매대금도 홍콩 본사에 송금되지 않고 대포계좌로 이체, 소진하여 현금 환전 불가

■ C코인의 경우

- 코인 생성 프로그램 개발 없이 지갑어플만 개발하여, 투자 회원들에게 그 투자금에 따라 코인이란 명칭으로 일종의 포인트를 부여한 후, 소수 외식업체 등으로부터 미리 돈을 주고 기프트콘을 구입해두었다가 투자 회원들이 지갑어플에서 해당 코인을 이용하여 유명 외식업체 등이 발행한 기프트콘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미리 확보해둔 기프트콘과 교환해주어 마치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코인이 개발된 것처럼 홍보, 투자금 수신

2 금융다단계 조직의 근간(根幹)인 '상위사업자' 그룹 엄단

- 상위사업자들은 소위 '센터장' 등 직함을 사용하여 하위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수신조직을 유지·확대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해왔음
- 이들은 운영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수당취득 내역을 근거로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 다단계에 투자토록하여 지속적으로 수당을 취득해왔음
- 이들은 자신들이 관여해 온 다단계 조직이 적발되는 경우, 선량한 투자자 행세를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옮겨가 재범하는 등 다단계 사업에 기생해온 자들로서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었음

※ 특히 A코인 금융 다단계로 입건된 지역센터장 등 상위사업자 44명 중 17명(38.6%)은 동종 전력이 있거나 동종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었음

대표적 사례

■ A코인 관련 금융다단계 지역센터장 A○○(남, 44세)

- A○○는 '16. 6.경 A코인 관련 금융다단계의 주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범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피해자 대표를 자처하며 출석하여 진술하였음
- 수사결과 A○○는 외국에서 A코인 관련 투자설명회를 주도하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취득하는 등 A코인 관련 금융다단계의 주요 상위사업자로 확인되어 구속기소

■ 스위스 사모펀드 투자 관련 금융다단계 지역센터장 B○○(여, 56세)

- B○○은 스위스 사모펀드 G회사 지역센터장으로서, '17. 11.경 G회사 한국 대표사업자가 구속되는 등 G회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급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G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함
- 수사결과 B○○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약 1억원을 취득하는 등 G회사의 주요 상위사업자로 확인되어 불구속기소

■ 금융다단계로 구속된 상태에서 교도소 내 동료 수용자 상대로 범행을 계속한 C○○(남, 50세)

- C○○은 '16. 10.경 M다단계조직 사건으로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있던 중 동료 수용자 6명을 상대로 계속 투자금을 수신, '17. 4.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계속 범행하다가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

[별지 - 사안 개요 및 처리내역]

① A코인 관련 금융다단계 조직

□ 총 44명 입건		
피고인 및 처리 요지	구속 2명	▷ 서울센터장 등 상위사업자 2명('17. 12. 28. 기소)
	불구속 42명	▷ 대구센터장 등 상위사업자 42명('17. 12. 28. ~ '18. 3. 29. 기소)
범행기간 · 수신규모	○ '15. 1.경 ~ '16. 4.경 / 5,243회 / 29,211,960,987원 수신	
범행수법 [죄명]	○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A코인을 구입하면 6개월 후 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이며, 하위투자자 모집시 추천수당 10%, 후원(매칭)수당 5~10%를 각 지급하겠다고면서, 3단계 이상의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수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② B코인 관련 금융다단계 조직

□ 총 7명 입건		
피고인 및 처리 요지	불구속 5명	▷ 서산센터장 등 상위사업자 5명('17. 12. 29. 기소)
	기소중지 2명	▷ 천안센터장 등 상위사업자 2명('17. 12. 29. 기소중지)
범행기간 · 수신규모	○ '14. 9.경 ~ '17. 3.경 / 1,196회 / 6,621,548,850원 수신	
범행수법 [죄명]	○ 투자자들을 상대로 'B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치가 수십배 상승할 것이며, B코인 판매대금은 홍콩 본사에 송금되어 예치되므로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이며, 하위투자자 모집시 추천수당 10%, 후원수당 10%, 후원매칭수당 3%를 각 지급하겠다'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3단계 이상의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수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③ C코인 프로그램 개발자 적발

□ 총 2명 입건		
피고인 및 처리 요지	구속 1명	▷ C코인 지갑 프로그램 개발자('17. 11. 13. 기소)
	불구속 1명	▷ C코인 생성 프로그램 개발자('18. 3. 20. 기소)
범행기간 · 수신규모	○ '15. 5.경 ~ '16. 6.경 / 2,287회 / 8,810,755,454원 수신	
범행수법 [죄명]	<p>▷ C코인 지갑 프로그램 개발자</p> <p>- 2015. 3.경 금융다단계업자 D로부터 1억 5,000만원 및 D운영회사 주식 10%를 받고, C코인 지갑 어플을 개발해주고, D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무역거래대금으로도 쓸 수 있는 가상화폐인 C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고 C코인의 구매대금은 100% 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이며, 하위투자자 모집시 추천수당, 후원수당, 후원매칭수당 각 10%를 지급하겠다'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3단계 이상의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수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p> <p>▷ C코인 생성 프로그램 개발자</p> <p>- 2015. 8.경 위 D로부터 "C코인 지갑 어플만 개발하여 마치 이미 가상화폐가 개발되어 있는 것처럼 투자수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위 지갑 어플과 연동될 수 있는 C코인 생성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코인 프로그램을 개발, 서버를 관리해주는 등으로 D의 금융다단계 투자수신을 도와주고 6,300만원을 취득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p>	

④ 구치소 내 동료수용자 상대 투자수신 적발

□ 총 1명 입건		
피고인 및 처리 요지	구속 1명	▷ 대구지사장 1명('17. 3. 29. 기소) ※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어 불구속기소
	범행기간 · 수신규모	○ '16. 9.경 ~ '17. 12.경 / 55회 / 677,117,000원 수신
범행수법 [죄명]	○ M회사의 무등록다단계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에게 다시 'M회사에 투자하면 가상화폐인 G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G포인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니 3년 후 매월 200만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 모집시 추천수당, 후원수당을 각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편취 [사기]	

⑤ '중국 친환경 사업체 투자' 관련 금융다단계 조직

□ 총 14명 입건

피고인 및 처리 요지	구속 4명	▷ 한국지사장 1명('18. 2. 8. 기소) ▷ 역삼센터장 등 상위사업자 3명('17. 12. 14. ~ '18. 3. 28. 기소)
	불구속 8명	▷ 부천센터장 등 상위사업자 8명('18. 3. 27. 기소)
	기소중지 2명	▷ 강남센터장 등 상위사업자 2명('18. 3. 27. 기소중지)
범행기간 · 수신평모	○ '17. 1.경 ~ '17. 12.경 / 3,658회 / 25,175,582,325원 수신	
범행수법 [죄명]	○ 중국 A회사가 생분해 비닐을 이용한 범씨 직파 농법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A회사에 투자하면 향후 A회사 상장시 주식으로 교환하여 주고, 하위 투자자 모집시 추천수당 14%, 후원수당 16%, 후원매칭수당 10%를, 글로벌 수당으로 250%를 각 지급하겠다고 3단계 이상의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수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⑥ 스위스 사모펀드 투자 관련 금융다단계 조직

□ 총 27명 입건

피고인 및 처리 요지	구속 2명	▷ 한국지사장 1명('18. 1. 8. 기소) ▷ 2번 사업자 1명('18. 2. 1. 기소)
	불구속 25명	▷ 센터장급 상위사업자 25명('17. 2. 1. ~ '18. 3. 5.)
범행기간 · 수신평모	○ '17. 3.경 ~ '17. 12.경 / 3,068회 / 24,861,114,560원 수신	
범행수법 [죄명]	○ 글로벌 사모펀드를 표방하는 스위스 G회사가 자동주식투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 대체에너지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G회사에 1년 간 투자하면 매주 2.5~4.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반환할 것이며, 하위투자자 모집시 추천수당 11%, 후원수당 12%, 후원매칭수당 9%를 각 지급하겠다고면서, 3단계 이상의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수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17. 9.경부터는 G회사로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G회사가 수익금 130억원을 국내로 송금했는데 외환 관련 법률상의 이유로 인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속이고 계속 투자금을 수신 [사기]	
사업실체	○ 사실 G회사는 자본금 2,000만원, 직원 3명의 1인 회사로서 경제 활동이 전혀 없는 회사임 ○ 투자금은 G회사 관련 계좌가 아닌 대포계좌를 통해 수신되었고 수신된 자금도 다수의 외국인 명의 대포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으며, G회사가 수익금 130억원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도 없었음	